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Q. 필요인력 유급휴가 중 대체 고용인력이 인정되나요?

필요인력이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 시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장기유급휴가자를 대체하는 상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후 인정가능합니다.

Q. 필요인력의 최종 퇴직일 직전 기간에 연차 휴가인 경우, 인력으로 산정 가능하나요?

필요인력(상근하는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은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16일 이상 장기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환자수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에서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약사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인정되나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와 관련하여 환자수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에서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휴가가 인정 가능합니다.